



## 美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

- Scope 3 의무 제외하고, 중대성 기준 확대를 통해 전반적 완화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2024. 3. 6. 기업들의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규정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SEC는 2022. 3. 21. 발표하였던 초안에서 여러 수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었는데, 기업들의 반대가 많던 부분을 완화한 흔적이 돋보입니다.

### 1. 배경

미국의 SEC는 지난 2022. 3. 21. 기업들의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발표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가장 큰 화제는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화였습니다.

Scope 1배출량은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의미하고, Scope 2는 전기, 스팀, 냉방의 사용으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Scope 3는 원자재, 공급, 유통, 물류 등 공급망 사슬의 전 과정에 걸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뜻합니다.

Scope 3는 그 추적이 쉽지 않고,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집계될 수 있어 기업들에게 Scope 3까지 공시하라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므로, SEC의 초안은 당시 기업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였고, 미국 정치권에서도 공화당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은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이 반대의견 등을 반영하여 약 2년 후인 2024. 3. 6. 수정 및 확정된 것입니다.

※ 참고 - 관련 화우 뉴스레터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변화 정보공개 의무화 규제안 마련 \(22. 3\)](#)
- [美 캘리포니아주, Scope 3 포함 기후공시 의무법안 실행 전망 \(hwawoo.com\)\(23.10\)](#)

### 2. 주요 내용

#### 가. 주요 요구사항

SEC가 이번 최종안을 통해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분	주요 내용
Scope 3 공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ope 3 공시 의무 없음</li> </ul>
Scope 1,2 공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 대기업(Large Accelerated Filers)과 중소기업(Accelerated Filers)은 중대한 경우에 한해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li> <li>- '중대한 경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SEC는 배출량의 계산과 공개가 투자자들이 기업이 제시한 목표 성취 관련 전환 리스크 및 진전사항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를 강조함</li> <li>-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음 해 2분기의 재무보고시점까지 제출 허용</li> <li>- 관련 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최종적으로 제한된 인증(Limited Assurance)을, 대기업은 최종적으로 합리적 인증(Reasonable Assurance) 필요 (합리적 인증의 인증수준이 제한된 인증보다 높음)</li> </ul>
재무관련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관련 공시사항을 작성하는 데 있어 근거한 추정치와 전제의 논의가 어떻게 기후나 기타 자연적인 상황 등에 따른 리스크와 불확실성 때문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적 설명 기재</li> <li>- 심각한 기상 상황 또는 기타 자연적인 상황·탄소 상쇄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관련 지출, 자본화 비용, 손실 공시</li> </ul>
리스크 관리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 인지 시, 기업들은 그 인지·평가·관리 절차와 해당 절차가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는지 공시</li> </ul>
거버넌스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감독 담당 이사회 위원회, 해당 담당 위원회 등이 관련 리스크를 고지받는 방법, 기업의 목표와 전환 계획을 향한 진전에 대해 해당 담당 위원회 등이 관리감독하는 방법 등을 공시(이사회가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li> <li>- 기후 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진 직책 또는 위원회 등, 관련 리스크를 경영진이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 등을 공시(중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와 관련이 없는 기업의 경우 제외)</li> </ul>
기후 관련 리스크의 영향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스스로 인식하였거나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해 공시</li> <li>- 단기(향후 1년)·장기(그 후) 전략, 업무수행 결과, 재정적 상황 등</li> <li>- 기업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대한 실질적/잠재적인 중대한 영향</li> </ul>
기업의 기후 관련 정책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사업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후 관련 목표·시나리오와 분석·내부 탄소가격·전환 계획 등을 공시</li> </ul>
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PSLRA) 면책조항(Safe harb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SLRA의 면책조항을 전환 계획·시나리오 분석·내부 탄소가격·목표 등 관련 향후 계획 공시에 대해 적용</li> </ul>

## 나. 단계적 공시 기간

SEC의 최종안에 근거하여 기업들이 따라야 할 단계적 공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	2026	2029	2033
대기업	우측기재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시사항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한적 인증사항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일반적 인증사항
		재무관련 공시사항		
	2026	2027	2028	2031
중소기업	우측기재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시사항	재무관련 공시사항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한적 인증사항
	2027		2028	
소규모 및 기타	우측기재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시사항		재무관련 공시사항	

※ 소규모 및 기타는 Smaller Reporting Companies, Emerging Growth Companies, and Non-Accelerated Filers 년도는 모두 FYB (Fiscal Year Begins), 해당 회계연도 개시를 의미

## 3. 시사점

SEC의 기후 공시 관련 규정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안보다 많이 수정되어 최종안이 발표되었지만, 미국 내 논란은 계속되는 형국입니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조지아 등 10개 주는 해당 규정이 SEC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미 제11구역 항소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SEC 기후 공시 규정 최종안의 주요 반영 내용(Scope 3 배출량이 삭제되었다는 점, 중대성(Materiality)이 공시 수행의 근거가 되는 등 강조가 된 점 등)은 향후 국내·외적으로 확립될 여러 ESG 공시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며 여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 기준 또한 포함될 것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ESG Tot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고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ESG 정책 및 규제환경에서 화우ESG센터는 고객의 신뢰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신승국**

T. (+82) 2 6182 8502

센터장/미국변호사

E. [synn@yoonyang.com](mailto:synn@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mailto:klee@yoonyang.com)

**김정남**

T. (+82) 2 6003 8559

ESG전략 그룹장

E. [in kim@yoonyang.com](mailto:in kim@yoonyang.com)

**강석준**

T. (+82) 2 6182 8505

변호사

E. [kangs j@yoonyang.com](mailto:kangs j@yoonyang.com)

**양희**

T. (+82) 2 6003 7674

시니어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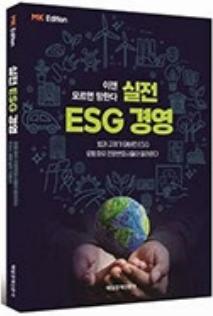
E. [hyang@yoonyang.com](mailto:hyang@yoonyang.com)

**김현지**

T. (+82) 2 6003 7470

시니어컨설턴트

E. [khji@yoonyang.com](mailto:khji@yoonyang.com)



화우 ESG센터는 기업이 ESG 규범화 이슈를 대응함에 있어 도움을 드리하고자 '실전ESG경영'을 출간하였습니다.

주요 ESG 영역별 규범화 동향, 공급망 실사 규제 지침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산업별 주요 ESG 이슈 등을 담고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 정보 바로가기](#)